제84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지정연장 및 신규지정 (강화) - '22.7.31.자로 유통이력 신고대상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4개 품목(양파 등) 재지정 및 4개 품목 신규지정(마늘 등) ▶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의1	1.비중요
2	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관세청)	1.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(강화) - 유통이력 대상물품 3개 재지정(에이치형감 등) ▶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	1.비중요
3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수입식품등의 신고 시 사진 제출 의무화(신설) -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제품사진 추가 ▶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2.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강화(강화) -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되어 간소한 서류심사로 처리되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 * (기존) 생산국, 품명, 수출업소가 동일한 경우 인정 (변경) 생산국, 품명, 수출업소, 해외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 인정 ▶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10]	1.비중요 2.비중요
4	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인력 자격요건(신설) -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학력, 경력 등 요건 마련 ▶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법무부)	1.송환기한의 연기(신설) - 송환지시를 받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기한 내에 송환대상외국인을 불가피한 사유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기한 연기신청 의무 부과 ▶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3 2.출국대기실 미설치 출입국항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(신설) -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생활용품 제공의무,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 등 부여 ▶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5	1.비중요 2.비중요
6	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법무부)	1.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(신설) -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, 송환대기장소 변경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의무 규정 ▶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2	1.비중요
7	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(신설) -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- 대한건축사협회는 감리원이 복수 이상의 해체공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,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,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▶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(신설) -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지정 이후 교육기관 운영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, 전년도 운영 실적(이수현황 등 포함)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▶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3.해체작업 개선사항 이행완료여부 확인(신설) - 허가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관리자·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의무 부여 등 ▶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.해체공사 감리자의 시각자료 촬영.보관.제출의무(강화) - 해체공사감리자는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목적을 고려하여 공정·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하고,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이후 30일까지 보관하도록 규정 ▶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5.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(신설) - 해체공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·감리원에게 3년의 인정 기간을 가진 신규교육(35시간) 및 보수교육(14시간)을 이수할 의무 부여 ▶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혼입가능성 표시 개선(강화) -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·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▶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의3	1.비중요
9	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시 제조·수입업자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점검표 제출 의무(강화) - 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시 신청한 제조·수입업자로 하여금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점검표 제출 의무 부여 ▶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의2 2.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세부기준 절차 구체화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(신설) -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간이측정기 범위(규제 범위)를 5개 매체(소음 측정기기 등)로 한정 등 ▶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,제12조 3.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(신설) -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인력,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▶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(신설) -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기준(기술인력, 시설 및 장비 기준 등) 신설 ▶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	1.비중요
11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굴착기 충돌방지조치 강화(신설) - 사업주에게 굴착기에 △후방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하고 △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부여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2.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(신설) -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8종(디부틸 프탈레이트 등)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국소배기장치, 세척설비 운영, 보호구 착용, 안전교육 등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 등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3.급배기 환기장치 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의무(신설) -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·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, 환기장치 및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출입구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의2 4.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의 안전관리 기준(신설) - 방호구역·소화용기실의 출입제한, 방호구역 내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